

『구미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낙관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-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웰다잉 문화 확산, 교육, 홍보 등 관련사업 추진 및 법인·단체에 대한 예산지원(안 제5조~제6조)
-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(안 제7조)
- 사업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유출 금지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6. 26. ~ 7. 2.) 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시민 각자가 스스로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음.

○ 검토 결과,

-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‘죽음’이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적이고 그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죽음에 대한 준비도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바, 시민들이 삶의 한 과정으로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인정됨.
-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거쳤고,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본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간답고 가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, 웰다잉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